

농림축산식품부

시 정 요 구

제 목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액 징수 소홀

기 관 명 경상남도

관 계 기 관 경상남도 본청, 창원시, 진주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산청군, 거창군

내 용

경상남도에서는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 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농지전용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농지법」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르면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부과·통지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기내 납부하여야 하며,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전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농지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농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를 하거나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허가 등을 한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 및 「건축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처리토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농지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이 있을 경우 건축허가 부서 등 인·허가부서에서는 농지전용허가 담당부서에 농지전용 여부를 협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농지전용허가 담당부서에서는 「농지법 시행령」 제33조에서 정하고 있는 심사기준에 따라 허가할 경우에는 「농지전용 업무처리규정」 제21조 제3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납입을 확인한 후에 허가증을 교부하도록 협의조건을 부하여 동의하여야 하고, 건축허가부서 등 인·허가 부서에서는 건축허가증 등 교부시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사실을 확인한 후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체납이 발생한 경상남도 본청, 창원시, 고성군 등 12개 시·군에서는 체납자에 대해 납부 독촉 등의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감사일 현재까지 [표]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액 현황”과 같이 총 66건, 34,405,382,310원의 농지보전부담금이 체납된 상태로 있다.

[표]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액 현황(2016. 9월말 기준)

부과 권자	건수	체 납 현 황(원)				
		농지보전부담금	가산금	농지조성비	농지전용부담금	계
계	66	32,331,991,510	1,427,189,290	290,876,350	355,325,160	34,405,382,310
본 청	1	86,860,550	4,343,020			91,203,570
창원시	6	20,585,044,020	840,627,970			21,425,671,990
진주시	3	39,729,120	1,986,450			41,715,570
사천시	3	22,995,800	760,980			23,756,780
김해시	2	10,990,715,800	549,483,680			11,540,199,480
밀양시	24	426,641,230	21,331,680	290,876,350	355,325,160	1,094,174,420
의령군	1	2,377,170	118,850			2,496,020
함안군	5	44,186,320	2,168,900			46,355,220
창녕군	5	53,999,580	2,486,740			56,486,320
고성군	6	28,713,540	1,435,660			30,149,200
산청군	9	44,296,710	2,123,780			46,420,490
거창군	1	6,431,670	321,580			6,753,250

* 2006년부터는 농지조성비와 농지전용부담금이 농지보전부담금 명목으로 전환

조치할 사항 경상남도지사, 창원시장, 진주시장, 사천시장, 김해시장, 밀양시장, 의령군수, 함안군수, 창녕군수, 고성군수, 산청군수, 거창군수는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액 34,405,382,310원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토록 하거나, 체납자에 대해 농지전용 동의조건에 의한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